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4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정점식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9. (생략) <u><신설></u> ③ ~ ⑩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 ③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남해안권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¹⁾이 제정되어 있는데, 동 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²⁾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발전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³⁾,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⁴⁾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⁵⁾,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⁶⁾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의 연혁을 살펴 보면, 제17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개발과 관련 하여 3건의 법률안⁷⁾과 동해안권 개발 관련 1건의 법률안⁸⁾이 발의되었고, 4건의 법률안들을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2007년에 의결·공포되었으며, 2010년에 다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음⁹⁾.

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1.~10. (생략)

②·③ (생략)

3)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4)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5)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장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6)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7)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의원등 19인, 의안번호 제174819호)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등 28인, 의안번호 제174860호)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의원등 23인, 의안번호 제175086호)

8)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윤두환의원등 15인, 의안번호 제175719호)

9)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2007.12.27. 제정되어 2008.6.28.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4.15.에는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법률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2010.10.16. 시행)하였음.

동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남해안을 포함한 해안권의 발전과 지역 산업의 활성화,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간의 인구 변화¹⁰⁾를 살펴 보면 남해안권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10만 9,299명과 12만 1,363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음.

[최근 10년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인구 변화]

(단위: 명, %)

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2015	1,903,046	3,356,488
2016	1,903,692	3,369,271
2017	1,897,681	3,374,601
2018	1,886,297	3,377,248
2019	1,868,856	3,366,286
2020	1,853,339	3,347,637
2021	1,839,698	3,324,735
2022	1,825,534	3,293,709
2023	1,810,071	3,261,361
2024	1,793,747	3,235,125
10년간 인구 차이 (변화율)	△109,299 (△5.74)	△121,363 (△3.6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주 : 인구 현황은 매년 7월 기준

10)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746호,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은 남해안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제안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권역 발전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남해안권에 특화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남해안종합개발청이 권역 개발 및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경우,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등에 대해서도 해당 권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설치가 요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동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¹¹⁾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을 소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심사 경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남해안 종합개발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해양관광지구

1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746호, 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안권을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은 남해안권 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남해안청을 설치할 위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남해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재정지원, 조세 감면 등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가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39